

|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보도일시 | 배포 즉시 보도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배포일시 | 2021. 11. 25.(목) | 공보담당관실   | 02-6788-3655                |
| 위원회  | 보건복지위원회          | 담당 입법조사관 | 입법조사관 박애린<br>(02-6788-5495) |

## 보건복지위원회, 취약계층 복지 증진·건강보험 등 제도개선을 위한 124건 법안 처리

- 보호종료아동 지원대책 강화, 영아수당·첫만남이용권의 법적 근거 마련 등 -
-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급여 부정수급자 부당이득 전액환수 제도 도입 등 -

국회 보건복지위원회(김민석 위원장)는 11월 25일(목) 전체회의를 열어 11월 23일부터 3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2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.

오늘 의결된 주요 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

먼저, 「아동복지법」 주요 개정사항으로, <아동학대 예방>과 관련하여, ▲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 중 하나로 ‘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’을 추가하고, ▲ 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의 한 형태로 규정하였으며, ▲영유아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,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의 영유아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외부전문가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<아동보호체계 강화>와 관련하여, ▲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

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**보호대상아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하도록** 하였으며, ▲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**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·운영** , **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근거** 등을 마련하였다.

<저출산 대책>과 관련하여, 아동양육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「**아동수당법**」을 개정하여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까지로 **상향**하고,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외 2022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24개월간 월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(영아수당)하되, 보육료 이용권 및 아이돌봄 이용권으로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. 다만, 지급액은 2022년 30만원에서 시작하여 2023년 35만원, 2024년 40만원,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. 또한, 「**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**」을 개정하여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는 바우처 형태의 첫만남이용권(200만원)을 지급받도록 하였다. 아동수당 연령 확대와 영아수당 및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통해 아동양육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<장애인정책>과 관련하여, 「**장애인복지법**」을 개정하여,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제한 근거가 되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**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**하고자 하였고,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**홍보영상 제작·배포·송출** 근거를 신설하였다.

<건강보험정책>과 관련해서는 「**국민건강보험법**」을 개정하여 ▲**요양기관이** 가입자 등에 대하여 **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**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엄격히 통제하고, ▲**의약품 제조판매자가 약**

가인하 등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쟁송 중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었으나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그 반사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 ▲급여 또는 급여비용의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하였다.

또한, <장기요양보험>과 관련하여,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을 개정하여 ▲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안전 보장 강화를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·운영을 의무화하였고, ▲장기요양보험료율의 부과표준을 ‘건강보험료’에서 ‘소득’으로 변경하여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과부담 인식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, ▲의료기관에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을 부정 편취하는 경우 그 부당이득에 대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.

<공공보건의료정책>과 관련하여,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을 개정하여, ▲보건관리자를 두고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응급장비의 설치·점검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, ▲응급실의 수용능력 확인 및 환자 이송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며, ▲국립중앙의료원으로 지정·운영되고 있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정책지원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는 등 응급의료체계를 재정비하도록 하였다. 또한, 「혈액관리법」을 개정하여, ▲헌혈자의 날을 법률로 지정하는 등 헌혈자 예우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, ▲혈장분획제제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혈장의 수급 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다. 아울러 「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 개정을 통해 장기등 기증자와 이식받은 자 간 서신교류 등 교류 활동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추모·예우를 강화함으로써 장기 등 이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그리고, 질병관리청 소관의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을 개정하여 ▲감염병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근거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출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였으며, ▲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심각 위기경보 발령 시 보건 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.

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·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. //끝